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	2020. . .	
연월일	(제 회)	

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

제출자	국무위원 정경두 (국방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군무원 인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국방 사이버 안보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「군무원인사법 시행령」 개정을 통해 군무원 사이버직렬이 신설됨에 따라 사이버직렬 채용을 위한 시험과목 등 신설하는 한편,

군무원 채용시 면접시험 평정요소 기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공채시 응시 자격증 필수직렬에 사이버 직렬 포함(안 별표2)
- 나. 사이버 직렬 공채 및 경채시 필기시험 과목 신설(안 별표3)
- 다. 면접시험 평정요소 등의 기준 개선(안 제21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0000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020. 4. 00. ~ 6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항제5호 중 ‘품행’을 ‘품행, 준법성, 도덕성’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의 평점을 위하여 필요한 참고자료를 수집하여 시험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.

별표 2의 정보통신의 직렬란 “전산”을 “전산, 사이버”로 한다.

별표 3 제1호 정보통신의 전산란 다음에 정보통신의 사이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 이 버	7급	국어, 영어, 한국사, 정보보호론, 네트워크 보안, 소프트웨어공학
	9급	국어, 영어, 한국사, 정보보호론, 네트워크 보안

별표 3 제2호 정보통신의 전산란 다음에 정보통신의 사이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 이 버	7급	소프트웨어공학, 정보보호론
	9급	네트워크 보안, 정보보호론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